



2023. 5. 26.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소요점검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Scorekeeping of the Bills Approved in 202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총괄 | 이정은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최철민 경제비용추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오명희 행정비용추계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작성 | 신현태(총괄, 지출) 추계세제분석관
박정환(수입) 추계세제분석관
윤주철(지출) 추계세제분석관

추계 | 이광근 윤주철 태정림 신현태 김계남
문지은 이주호 남 희 이수현 우병혁
김효진 김우림 임슬기 이윤경 박선아
정현하 최형수 이미연 여은구 어수진
강민지 김효경 박지원 문석휘 박성은
최천규 박정환 이정훈 고은비 추계세제분석관

지원 | 양희열 행정실무원
성유정 자료분석연구원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은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02) 6788-3776 | etc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3. 5.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5.1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보고서에 포함된 비용추계의 일부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비용추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안의 가결 이후 변화된 정보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발 간 사

국회의 입법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재정에 대한 입법의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계하는 의안비용추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로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의원발의안과 위원회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를 전담시켜 비용추계제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국회의 입법에 대한 재정영향 통제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서 2017년부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을 대상으로 하며, 재정수반법률은 의원발의안과 위원회대안 등뿐만 아니라 정부제출안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서는 2022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번 보고서에서는 수입법률과 지출법률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입법률에서는 법률별·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영향을, 지출법률에서는 분야별·성격별 재정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영향을 보다 다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022년 가결 법률에 따른 재정소요점검 실시 결과, 154건이 재정수반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수입법률 22건의 영향으로 연평균 16.4조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지출법률 88건의 영향으로 연평균 2.0조원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소요점검은 입법에 따른 재정영향을 점검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재정건전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원님의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5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차 례

요 약 / i

I. 서 론 / 1

- 1.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1
-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4

II. 2022년 재정수반법률의 현황 / 7

- 1. 가결 법률과 재정수반법률 7
- 2. 제안자별 및 위원회별 재정수반법률 9
- 3. 수입법률과 지출법률 14

III. 2022년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 22

- 1. 개요 22
- 2. 수입법률의 주요 특징 25
- 3. 수입법률별 재정소요점검 27
- 4.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소요점검 41

IV. 2022년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 51

- 1. 개요 51
- 2.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 54
- 3. 지출분야별 재정소요점검 55
- 4. 지출성격별 재정소요점검 66

V. 결 론 / 73

[부록] 2022년 주요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표 / 76

표 차례

[표 1] 2022년 재정수반법률 현황	7
[표 2] 2022년 재정수반요인 현황	8
[표 3] 2022년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10
[표 4] 2022년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12
[표 5] 2022년 수입법률 현황: 제안자별	15
[표 6] 2022년 수입법률 현황: 위원회별	16
[표 7] 2022년 수입법률 현황: 재정주체별	17
[표 8] 2022년 지출법률 현황: 제안자별	18
[표 9] 2022년 지출법률 현황: 위원회별	20
[표 10] 2022년 지출법률 현황: 재정주체별	21
[표 11] 2022년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제안자별	23
[표 12] 2022년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24
[표 13] 2022년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주체별	25
[표 14] 2022년 수입법률 현황: 수입법률별	28
[표 15] 2022년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법률별	29
[표 16] 2022년 개정 「법인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1
[표 17] 2022년 개정 「소득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3
[표 18] 2022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6
[표 19] 2022년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7
[표 20] 2022년 개정 「관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38
[표 21] 2022년 개정 기타 국세 관련 세법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39
[표 22] 2022년 개정 국세외수입 관련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40
[표 23] 2022년 수입법률 현황: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41
[표 24] 2022년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43
[표 25] 2022년 개정 과세대상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44
[표 26] 2022년 개정 과세표준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45
[표 27] 2022년 개정 세율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46
[표 28] 2022년 개정 세액공제·감면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47
[표 29] 2022년 개정 기타 국세수입 유형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48
[표 30] 2022년 개정 수입법률 적용기한 연장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49

[표 31]	2022년 개정 수입법률 요율 조정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50
[표 32]	2022년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제안자별	52
[표 33]	2022년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53
[표 34]	2022년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주체별	54
[표 35]	2022년 지출법률 현황: 지출분야별	56
[표 36]	2022년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분야별	57
[표 37]	2022년 일반·지방행정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59
[표 38]	2022년 교육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60
[표 39]	2022년 환경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61
[표 40]	2022년 사회복지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63
[표 41]	2022년 농림수산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64
[표 42]	2022년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66
[표 43]	2022년 지출법률 현황: 지출성격별	67
[표 44]	2022년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성격별	67
[표 45]	2022년 의무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70
[표 46]	2022년 재량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72

그림 차례

[그림 1]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의안비용추계 및 재정소요점검 처리과정	3
[그림 2] 2022년 재정소요점검 대상	9
[그림 3] 2022년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10
[그림 4] 2022년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13
[그림 5] 각 연도 재정소요점검 결과 추이	75

요 약

- (재정소요점검 개요)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재정변화’는 기준선(baseline)과 비교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추가 혹은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의미
 - 법률안 가결 후 확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재정정보를 제공
 - 의안비용추계는 의안 발의단계 재정수반법률안의 재정수반요인이 야기하는 ‘비용’(수입 순감 또는 지출 순증)을 추계
 -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재정변화’(수입 또는 지출의 증감)를 추계하므로, 국회 의안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을 포함
- (점검 필요성) 가결 법률의 중기재정영향에 대한 분석과 국회 의안심사과정에서의 수정 내용 및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추가재정소요 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입법 활동을 점검
 - (중기재정영향 분석) 가결 법률 시행 후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하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단년도에 국한해 분석하지 않고, 향후 5년간의 재정소요를 추계하므로 중기재정영향 분석에 유용한 수단
 - (추가재정소요 정보 제공) 재정소요점검은 국회의 의안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추계한 재정정보를 제공

- 의안비용추계는 의안 발의단계의 재정수반요인을 추계한다는 점에서 법률안이 상당 시간 경과 후 가결되는 경우 추계의 기반이 된 거시경제지표 변동, 예산안 확정 등의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재추계 필요
- 위원회대안의 경우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1)에 따라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비용추계서 첨부가 생략된 경우에도, 최종 가결안에 대한 재정소요를 점검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정보 제공 가능
- 정부가 첨부하여 제출하는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2)에 대한 재정소요도 파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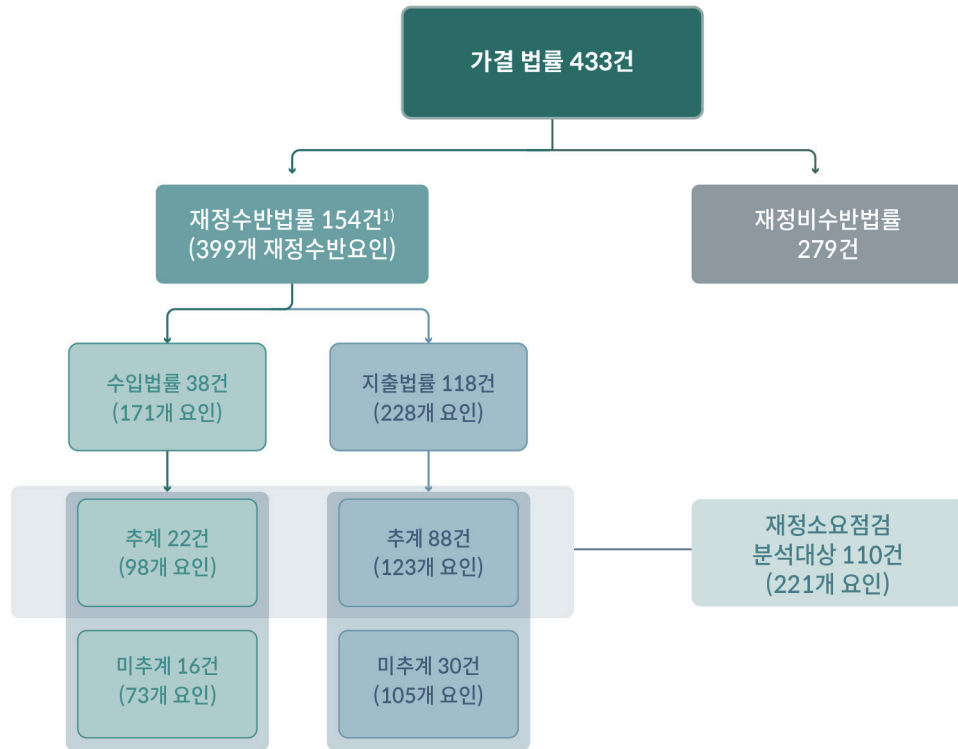
□ (점검 대상) 2022년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 433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154건이며, 이 중 현시점에서 점검이 곤란한 법률 등을 제외한 110건의 법률이 재정소요점검 대상 법률

- 2022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에 포함된 399개의 재정수반요인 중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재정수반요인은 총 221개

1)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③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④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2022년 재정소요점검 대상]



주: 1)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점검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6조 3,994억원의 수입 감소와 1조 9,533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됨
 - 2022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154건 중 점검이 가능한 110건의 221개 재정수반요인의 재정변동을 분석
 - 점검 대상 수입법률은 22건으로 98개 재정수반요인
 - 점검 대상 지출법률은 88건으로 123개 재정수반요인

□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법률별·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입법률별

- 「법인세법」 연평균 4조 1,163억원 감소, 「소득세법」 연평균 2조 6,992억원 감소, 「조세특례제한법」 연평균 8조 2,351억원 감소, 「종합부동산세법」 연평균 1조 1,202억원 감소 등 예상

○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 과세표준 관련 연평균 5조 9,423억원 감소, 세율 관련 연평균 5조 2,282억원 감소, 세액공제·감면 관련 연평균 3조 2,909억원 감소, 과세대상 관련 1조 7,778억원 감소 등 예상

□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분야별·지출성격별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출분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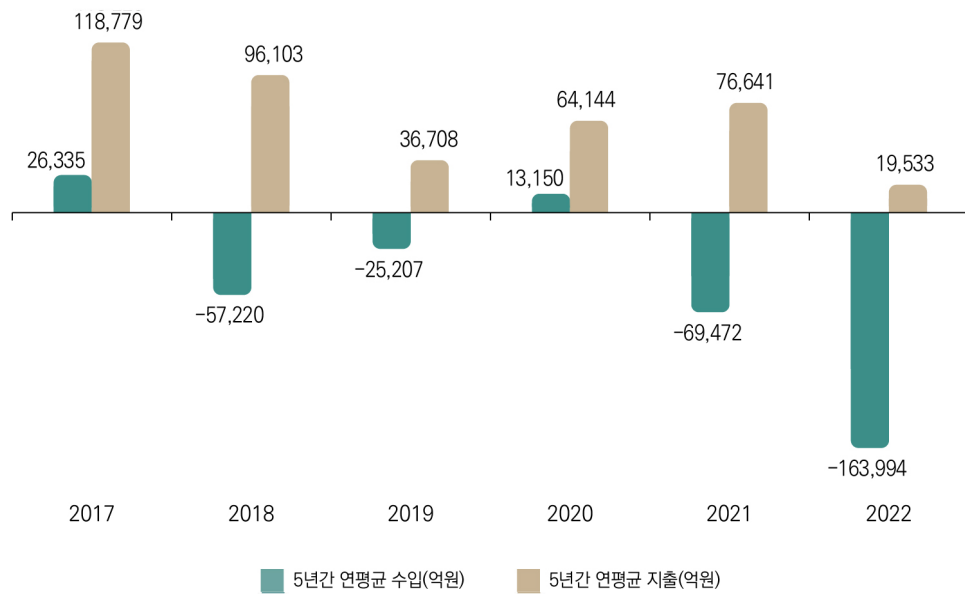
- 일반·지방행정 분야 연평균 5,507억원 증가, 교육 분야 연평균 1,408억원 증가, 환경 분야 연평균 1,377억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 연평균 4,591억원 증가, 농림수산 분야 연평균 3,986억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연평균 1,165억원 증가 등 예상

○ 지출성격별

- 의무지출은 연평균 3,667억원 감소, 재량지출은 연평균 2조 3,200억원 증가 예상

□ (종합) 2022년의 가결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결 법률의 영향에 따른 지출 증가는 예년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 감소는 큰 편일 것으로 예상됨

[각 연도 재정소요점검 결과 추이]



주: 조세지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할 경우, 수입법률로 인한 재정감소 효과는 2022년 기준 연평균 12조 8,871억원으로 예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 서 론

1.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 (정의)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재정변화’는 기준선(baseline)과 비교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추가 혹은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¹⁾을 의미
 - 입법의 재정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안 발의단계에서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의안비용추계²⁾와 유사하나, 재정소요점검은 법률안³⁾ 가결 후 확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수반요인을 ‘재추계’한다는 점에서 구별됨
 - (의안비용추계) 의안 발의단계 재정수반법률안의 재정수반요인이 야기하는 비용, 즉 ‘수입 순감 또는 지출 순증’이 추계 대상⁴⁾
 - (재정소요점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을 대상으로 심사과정에서

1) 해당 사업이나 수입의 전체 금액(총 재정소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 제·개정에 따라 추가로 변동이 발생하는 재정소요의 증감을 의미

2)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되면 법률안이 아닌 ‘법률’로 표현. 본 보고서에서는 ‘법률’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되, 경우에 따라 법률안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

4)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수정된 재정수반요인 등 재정환경 변화⁵⁾를 고려하여 '수입 또는 지출의 순증 및 순감'을 추계

□ (대상) 재정소요점검의 대상은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이며, 분석단위는 재정수반법률에 포함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법률'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의 변화를 야기하는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한 법률로서, 재정수반법률은 2개 이상의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할 수 있음
 - 제·개정된 재정수반법률은 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거나, 여러 개의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인별로 추계 결과를 점검
- 재정소요점검 대상 재정수반법률의 범위에는 국회 의안심사과정을 거쳐 가결된 의원발의안·위원회대안·정부제출안⁶⁾ 등을 모두 포함
 - 법률안이 국회 의안심사과정에서 수정된 경우, 긴급한 사유로 비용추계가 첨부되지 않은 위원회대안 등도 사후 재정소요점검의 대상⁷⁾
-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의 속성별(수입법률·지출법률)로 제안자, 소관위원회, 재정주체별로 제시되며, 수입법률에서는 수입법률별, 수입유형별, 지출법률은 지출분야별, 지출성격별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추가 제시
 - 수입법률별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외수입 관련 수입법률 등으로 구분
 - 수입유형별은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감면, 기타 국세수입

5) '재정환경 변화'는 의안 발의단계에서의 비용추계 시점과 달라진 거시경제지표 변화(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등)와 확정예산 등을 반영함

6) 의안비용추계는 의원발의안과 위원회대안 등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고, 정부제출안은 정부가 관련 비용을 추계하도록 하고 있음. 법률안 가결 후 이뤄지는 재정소요점검은 의원발의안, 위원회대안 등은 물론 정부제출안으로 가결된 모든 재정수반법률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함

7) 다만, 모든 재정수반법률의 예상 소요액을 추계할 수는 없음. 예를 들어, 제·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재정사업 등이 구체화되는 경우 비로소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추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유형, 적용기한 연장(국세외수입), 요율 조정(국세외수입) 등으로 구분

- 지출분야별은 일반·지방행정, 교육, 환경, 사회복지, 농림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등으로 구분
- 지출성격별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

□ (시점) 재정소요점검은 재정수반법률이 가결된 시점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시점에 실시하여 기준선을 정비

- 법률안 가결 후: 법률안 발의단계에 구체화되지 않았던 사업 계획 등이 법안 가결 후 수립되거나 재정수반요인이 수정되는 등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추계
- 예산안 확정 후: 제·개정된 법률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의 확정예산 등을 반영하여 재추계
 - 정부 사업계획과 제도변화를 고려하여 중기재정영향을 재추계

[그림 1]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의안비용추계 및 재정소요점검 처리과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가. 가결 법률의 중기재정영향 분석

- 재정소요점검은 가결 법률 시행 후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하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 가결 법률에 따른 재정소요는 법령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의무지출과 국회 예산과정을 통해서 통제되는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재정영향을 점검할 필요
 -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단년도에 국한해 분석하지 않고, 향후 5년간의 재정소요를 추계하므로 중기재정영향 분석에 유용한 수단
 - 다만,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재정수반법률 시행 시 예상되는 추계액으로 실제 예산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가 차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중기재정영향 분석에 유용

나. 가결 법률의 추가재정소요 정보 제공

- 재정소요점검은 국회의 의안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추제한 재정정보를 제공
 - 의안비용추계는 의안 발의단계의 재정수반요인을 추계한다는 점에서 법률안이 상당 시간 경과 후 가결되는 경우 추계의 기반이 된 거시경제지표 변동, 예산안 확정 등의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재추계 필요
 - 법률안별로 추계가 이루어지는 의안비용추계는 한 해 동안 가결된 법률안 전체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가결 법률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
 - 위원회대안의 경우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⁸⁾에 따라 긴급한 사유의

8)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③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

발생으로 비용추계서 첨부이 생략된 경우에도, 최종 가결안에 대한 재정소요를 점검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정보 제공 가능

- 정부가 첨부하여 제출하는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⁹⁾에 대한 재정소요도 파악 가능

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9)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④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Box1] 미국의 스코어키핑(Scorekeeping)과 예산과정에서의 역할

- 미국 연방예산과정에서 스코어키핑(Scorekeeping)은 계류 중인 재정 수반법률안과 현행 법률에 따른 예산상의 영향-연방 세출, 세입 및 적자규모-을 점검하는 장치¹⁰⁾
 - 스코어키핑을 통해 의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예산결의안에서 정한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재량지출), PAYGO¹¹⁾ 준칙(의무지출, 세입)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 미국 의회는 거시재정계획으로서 예산 총계, 세출의 기능별 배분, 예산조정지침으로 구성된 '예산결의안'을 작성하는데, 예산결의안이 확정된 이후에 의회에 제출되는 재정수반법률안은 예산결의안의 한도 수준과 예산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예산위원회 위원들은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상 이의를 제기(point of order)하여, 해당 법안의 심사를 중지하거나 수정하도록 할 수 있음¹²⁾
 - 예산심사가 종료된 후 집행한도를 넘는 지출이 결정되면 OMB(관리예산처,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스코어키핑을 통해 해당 재정소요에 대한 일괄삭감조치(sequestration)도 취할 수 있음
- 의회 예산위원회는 CBO(의회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스코어카드(Scorecard)를 확인하는 스코어키핑(Scorekeeping)을 총괄

10) CBO. "CBO Explains Budgetary Scorekeeping Guidelines", 2021. 1.

11) PAYGO(Pay-As-You-Go)는 2010년 법률로 전환되어, 의무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세입을 감소하는 법률을 입법하는 경우, 세입증가나 다른 지출을 감소하도록 하여 재정수지에 영향을 상쇄시키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제삭감(Sequestration)하여 재정수지에 영향이 없도록 한 제도

12) 국회예산정책처, 「미국의회예산처: 의회예산과정과 CBO의 역할」, 2012.

II. 2022년 재정수반법률의 현황

1. 가결 법률과 재정수반법률

- 2022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 433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154건¹³⁾
 - (수입법률) 전체 재정수반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변동을 수반하는 법률은 38건
 - 수입법률은 전체 재정수반법률 154건 중 38건으로 24.7%를 차지
 - (지출법률) 전체 재정수반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변동을 수반하는 법률은 118건
 - 지출법률은 전체 재정수반법률 154건 중 118건으로 76.6%를 차지
- 재정수반법률 154건 중 구체적인 시행 계획 미비 등으로 현시점에서 점검이 곤란한 법률 등을 제외한 수입법률 22건, 지출법률 88건 등 총 110건의 법률이 재정소요점검 대상 법률

[표 1] 2022년 재정수반법률 현황

(단위: 건, %)

재정수반법률	수입법률	지출법률	합계
법률 (비중)	38 (24.7)	118 (76.6)	154 ¹⁾ (100.0)
추계	22	88	110
미추계	16	30	44 ¹⁾

주: 1)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3)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건 포함

- 2022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154건에는 399개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구체적인 시행 계획 미비 등으로 현시점에서 점검이 곤란한 178개 요인을 제외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재정수반요인은 법률 110건의 221개
- 2022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은 399개로 154건의 가결 법률 1건당 평균 2.6개 요인을 포함
 - (수입법률) 2022년 가결된 수입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은 171개로 38건의 수입법률 1건당 평균 4.5개
 - (지출법률) 2022년 가결된 지출법률의 재정수반요인은 228개로 118건의 지출법률 1건당 평균 1.9개
 - 수입법률의 경우 법률 1건당 재정수반요인이 지출법률보다 약 2.6개 더 많은데, 이는 수입법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법에 다수의 재정수반요인들이 포함되기 때문¹⁴⁾
 - 추계한 재정수반요인은 221개로 수입법률의 경우 98개, 지출법률의 경우는 123개

[표 2] 2022년 재정수반요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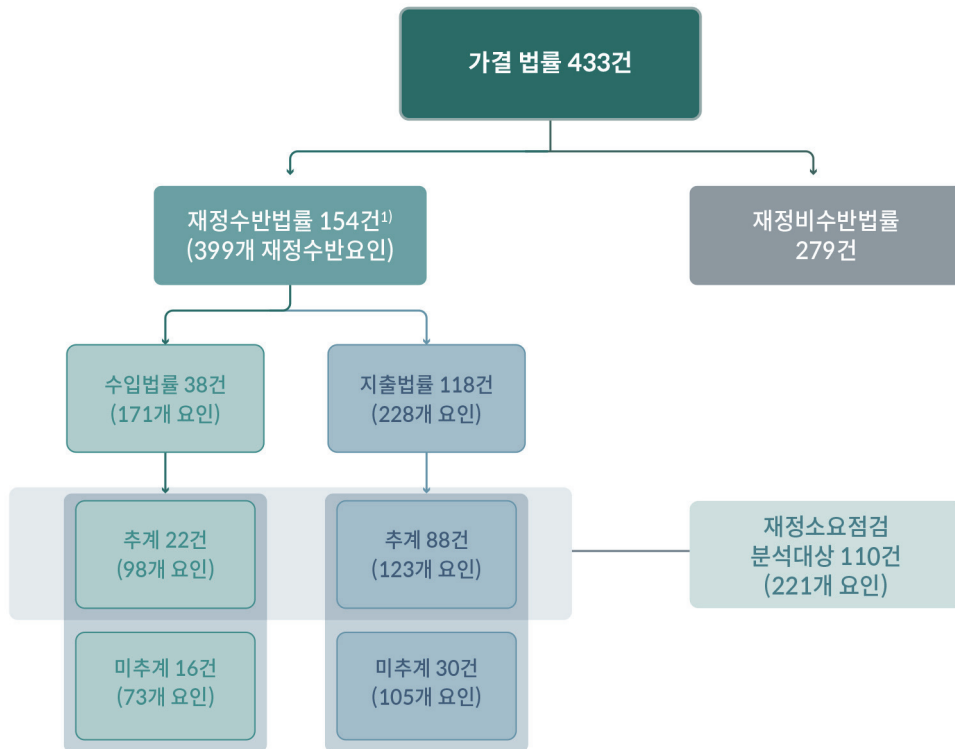
(단위: 개, %)

재정수반요인	수입법률	지출법률	합계
요인 (비중)	171 (42.9)	228 (57.1)	399 (100.0)
추계	98	123	221
미추계	73	105	17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4) 일례로 「조세특례제한법」(정부, 2022. 12. 23. 의결)의 경우 83개의 재정수반요인을 포함

[그림 2] 2022년 재정소요점검 대상



주: 1)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제안자별 및 위원회별 재정수반법률

- (제안자별) 2022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제안자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반법률 154건을 제안자별로 살펴보면, 위원회가 86건(5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원 52건(33.8%), 정부 16건(10.4%) 순
 - 가결 법률 433건을 제안자별로 보면, 위원회가 199건(46.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원 190건(43.9%), 정부 44건(10.2%) 순
 - 점검 대상인 재정수반요인 221개는 제안자별로 위원회 103개(46.6%), 정부 90개(40.7%), 의원 28개(12.7%) 순

[표 3] 2022년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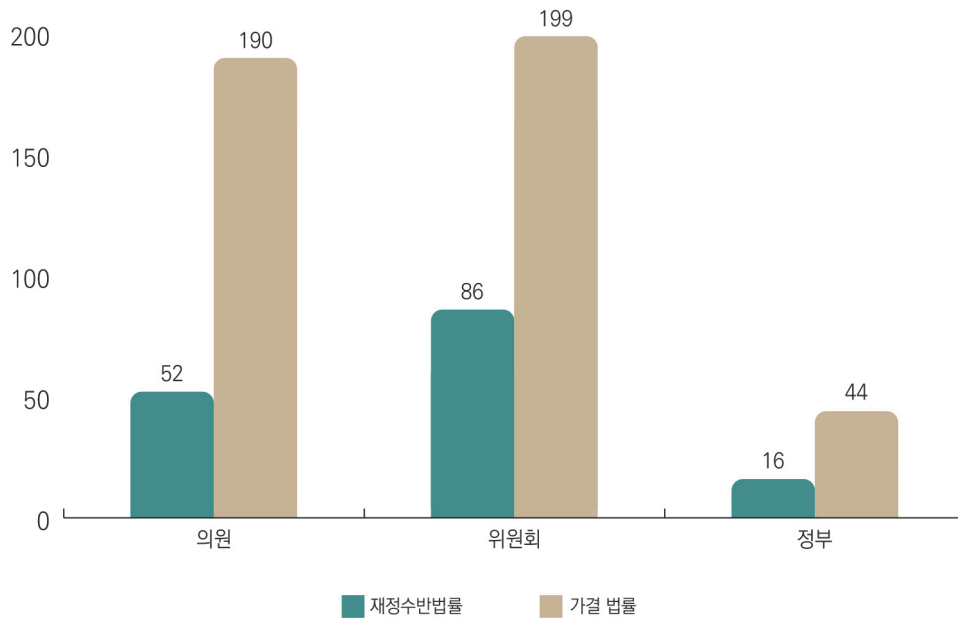
(단위: 건, 개, %)

제안자	가결 법률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의원 (구성비)	190 (43.9)	52 (33.8)	28 (25.5)	62 (15.5)	28 (12.7)
위원회 (구성비)	199 (46.0)	86 (55.8)	68 (61.8)	198 (49.6)	103 (46.6)
정부 (구성비)	44 (10.2)	16 (10.4)	14 (12.7)	139 (34.8)	90 (40.7)
합 계	433 (100.0)	154 (100.0)	110 (100.0)	399 (100.0)	221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3] 2022년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단위: 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원회별) 2022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의 위원회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반법률 154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위원회가 2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각각 21건, 행정안전위원회 18건, 기획재정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가 각각 17건 순
- 가결 법률 433건을 위원회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2건, 국토교통위원회 51건, 환경노동위원회 48건, 행정안전위원회 47건 순
- 점검 대상인 재정수반요인 221개는 기획재정위원회 91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개, 환경노동위원회 18개, 행정안전위원회 14개 순

[표 4] 2022년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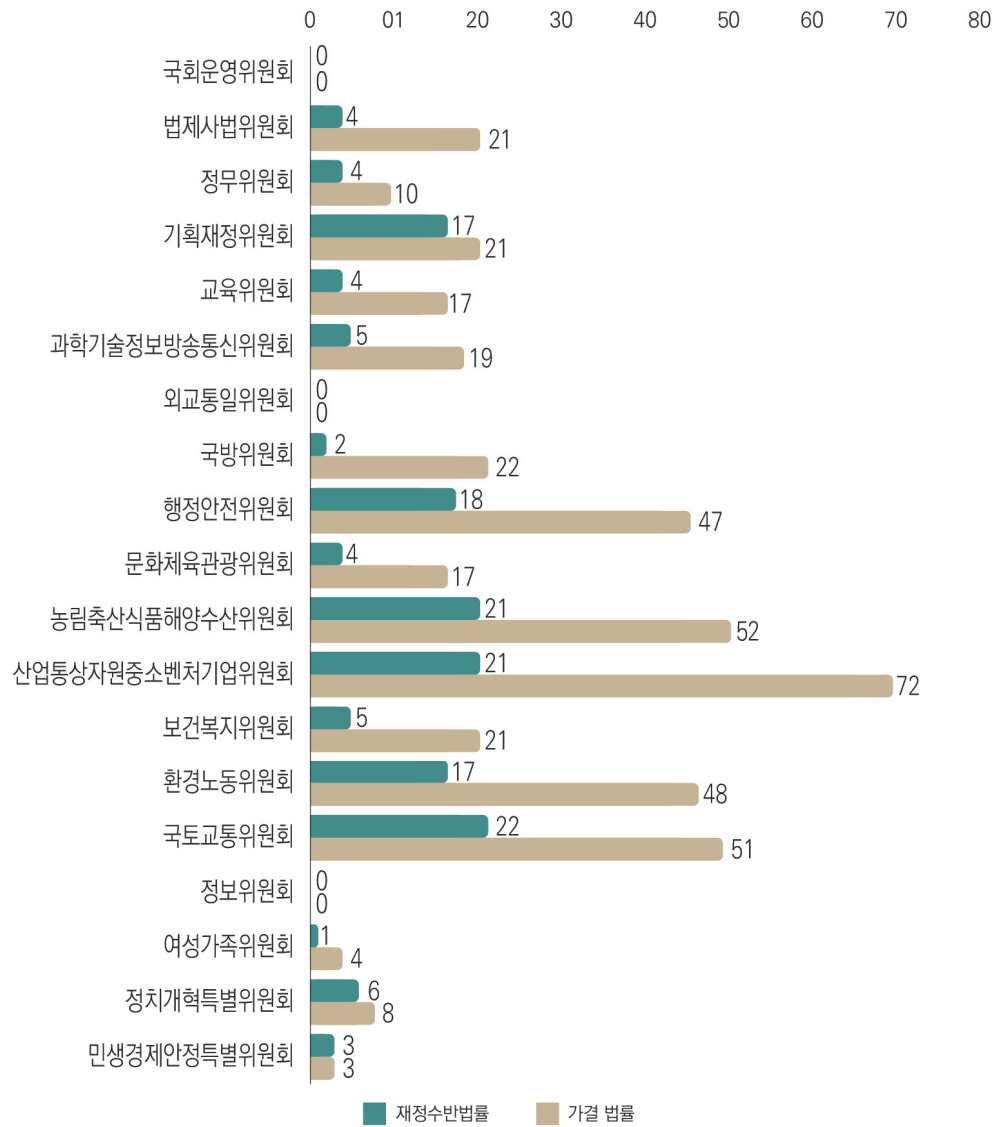
(단위: 건, 개)

위원회	가결 법률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국회운영위원회	-	-	-	-	-
법제사법위원회	21	4	3	4	3
정부위원회	10	4	4	9	9
기획재정위원회	21	17	15	142	91
교육위원회	17	4	3	4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9	5	5	11	8
외교통일위원회	-	-	-	-	-
국방위원회	22	2	2	2	2
행정안전위원회	47	18	10	45	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	4	4	4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2	21	13	39	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2	21	14	54	22
보건복지위원회	21	5	5	6	5
환경노동위원회	48	17	14	39	18
국토교통위원회	51	22	10	26	10
정보위원회	-	-	-	-	-
여성가족위원회	4	1	1	1	1
정치개혁특별위원회	8	6	6	10	10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3	3	1	3	1
합 계	433	154	110	399	2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4] 2022년 재정수반법률 현황: 위원회별

(단위: 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수입법률과 지출법률

가. 수입법률

- 2022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변동에 영향을 미친 수입법률 38건에는 171개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구체적인 시행 계획 미비 등으로 현시점에서 점검이 곤란한 73개 요인을 제외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점검한 재정수반요인은 법률 22건의 98개
- (제안자별) 2022년 가결된 수입법률 재정수반요인의 제안자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점검이 가능한 수입법률 22건을 제안자별로 살펴보면, 정부가 14건(63.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원 5건(22.7%), 위원회 3건(13.6%) 순
 - 수입법률 38건을 제안자별로 보면, 정부가 15건(3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원 12건(31.6%), 위원회 11건(28.9%) 순
 - 점검 대상인 재정수반요인 98개는 제안자별로 정부 90개(91.8%), 의원 5개(5.1%), 위원회 3개(3.1%) 순

[표 5] 2022년 수입법률 현황: 제안자별

(단위: 건, 개, %)

제안자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의원 (구성비)	12 (31.6)	5 (22.7)	15 (8.8)	5 (5.1)
위원회 (구성비)	11 (28.9)	3 (13.6)	18 (10.5)	3 (3.1)
정부 (구성비)	15 (39.5)	14 (63.6)	138 (80.7)	90 (91.8)
합 계	38 (100.0)	22 (100.0)	171 (100.0)	98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원회별) 2022년 가결된 수입법률 재정수반요인의 위원회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점검이 가능한 수입법률 22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가 15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건, 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각각 1건 순
 - 수입법률 38건을 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17건, 국토교통위원회 10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는 각각 1건 순
- 점검 대상인 재정수반요인 98개는 기획재정위원회 91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개, 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각각 1건 순

[표 6] 2022년 수입법률 현황: 위원회별

(단위: 건, 개)

위원회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국회운영위원회	-	-	-	-
법제사법위원회	-	-	-	-
정무위원회	-	-	-	-
기획재정위원회	17	15	142	91
교육위원회	-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	-
외교통일위원회	-	-	-	-
국방위원회	-	-	-	-
행정안전위원회	-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0	1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	4	6	4
보건복지위원회	1	1	1	1
환경노동위원회	1	0	4	0
국토교통위원회	10	1	14	1
정보위원회	-	-	-	-
여성가족위원회	-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3	1	3	1
합 계	38	22	171	9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주체별) 2022년 가결된 수입법률 재정수반요인의 재정주체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점검이 가능한 수입법률 22건¹⁵⁾을 재정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가 21건(84.0%), 지방자치단체가 4건(16.0%)을 차지

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 대상 법률 3건 포함

- 수입법률 38건¹⁶⁾을 재정주체별로 보면, 국가가 31건(68.9%), 지방자치단체가 14건(31.1%)을 차지
- 점검 대상인 재정수반요인 98개¹⁷⁾는 국가가 97개(82.9%), 지방자치단체가 20개(17.1%)

[표 7] 2022년 수입법률 현황: 재정주체별

(단위: 건, 개, %)

재정주체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¹⁾	점검대상 ²⁾	전체 ³⁾	점검대상 ⁴⁾
국가 (구성비)	31 (68.9)	21 (84.0)	163 (84.5)	97 (82.9)
지방자치단체 (구성비)	14 (31.1)	4 (16.0)	30 (15.5)	20 (17.1)
합 계	38 (100.0) ⁵⁾	22 (100.0) ⁵⁾	171 (100.0) ⁵⁾	98 (100.0) ⁵⁾

주: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7건 포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 대상 법률 3건 포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재정수반요인 22개 포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 19개 포함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및 재정수반요인의 재정주체별 건 수 및 개수의 합은 합계를 초과하나 합계의 의미를 고려하여 100.0%로 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지출법률

□ 2022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변동에 영향을 미친 수입법률 118건에는 228개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구체적인 시행 계획 미비 등으로 현시점에서 점검이 곤란한 105개 요인을 제외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점검한 재정수반요인은 법률 88건의 123개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7건 포함

1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 19개 포함

□ (제안자별) 2022년 가결된 지출법률 재정수반요인의 제안자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점검이 가능한 지출법률 88건을 제안자별로 살펴보면, 위원회가 65건(73.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원 23건(26.1%), 정부 0건(0.0%)¹⁸⁾ 순
 - 지출법률 118건을 제안자별로 보면, 위원회가 76건(64.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원 41건(34.7%), 정부 1건(0.8%) 순
- 점검 대상인 재정수반요인 123개는 제안자별로 위원회 100개(81.3%), 의원 23개(18.7%) 등

[표 8] 2022년 지출법률 현황: 제안자별

(단위: 건, 개, %)

제안자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의원 (구성비)	41 (34.7)	23 (26.1)	47 (20.6)	23 (18.7)
위원회 (구성비)	76 (64.4)	65 (73.9)	180 (78.9)	100 (81.3)
정부 (구성비)	1 (0.8)	0 (0.0)	1 (0.4)	0 (0.0)
합 계	118 (100.0)	88 (100.0)	228 (100.0)	123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원회별) 2022년 가결된 지출법률 재정수반요인의 위원회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점검이 가능한 지출법률 88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환경노동위원회가 14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3건, 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각각 10건, 국토교통위원회 9건, 정치개혁특

18) 정부제출안의 재정수반법률은 1건이며, 점검 대상인 재정수반요인 중 정부제출안은 없음

별위원회 6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건 순

- 지출법률 118건을 위원회별로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1건, 행정안전위원회 18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건, 환경노동위원회 16건, 국토교통위원회 12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6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건 순
- 점검 대상인 재정수반요인 123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가 각각 18개, 행정안전위원회 14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개, 정부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9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개 순

[표 9] 2022년 지출법률 현황: 위원회별

(단위: 건, 개)

위원회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국회운영위원회	-	-	-	-
법제사법위원회	4	3	4	3
정무위원회	4	4	9	9
기획재정위원회	-	-	-	-
교육위원회	4	3	4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	5	11	8
외교통일위원회	-	-	-	-
국방위원회	2	2	2	2
행정안전위원회	18	10	45	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	4	4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1	13	38	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	10	48	18
보건복지위원회	4	4	5	4
환경노동위원회	16	14	35	18
국토교통위원회	12	9	12	9
정보위원회	-	-	-	-
여성가족위원회	1	1	1	1
정치개혁특별위원회	6	6	10	10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	-	-	-
합 계	118	88	228	1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주체별) 2022년 가결된 수입법률 재정수반요인의 재정주체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점검이 가능한 지출법률 88건¹⁹⁾을 재정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가 82건(85.4%), 지방자치단체가 14건(14.6%)을 차지

1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 대상 법률 8건 포함

- 지출법률 118건²⁰⁾을 재정주체별로 보면, 국가가 106건(76.2%), 지방자치단체가 33건(23.7%)을 차지
- 점검 대상인 재정수반요인 123개²¹⁾는 국가가 111개(86.0%), 지방자치단체가 18개(14.0%)

[표 10] 2022년 지출법률 현황: 재정주체별

(단위: 건, 개, %)

재정주체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¹⁾	점검대상 ²⁾	전체 ³⁾	점검대상 ⁴⁾
국가 (구성비)	106 (76.2)	82 (85.4)	194 (77.0)	111 (86.0)
지방자치단체 (구성비)	33 (23.7)	14 (14.6)	58 (23.0)	18 (14.0)
합 계	118 (100.0) ⁵⁾	88 (100.0) ⁵⁾	228 (100.0) ⁵⁾	123 (100.0) ⁵⁾

주: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1건 포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 대상 법률 8건 포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재정수반요인 24개 포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 6개 포함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및 재정수반요인의 재정주체별 건수 및 개수의 합은 합계를 초과하나 합계의 의미를 고려하여 100.0%로 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1건 포함

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 6개 포함

III. 2022년 수입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1. 개요

- 2022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변동에 영향을 미친 수입법률은 38건(재정수반요인은 171개)으로서 이 중 점검이 가능한 22건 법률(재정수반요인 98개)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²²⁾ 16조 3,994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이하에서는 점검이 가능한 22건 법률의 98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
 - 단,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른 수입 감소 규모는 법률의 개정이 없었을 경우의 세수와 대비하여 감소한 규모로, 조세지출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포함하고 있음
 - 조세지출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제외할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2조 8,871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제안자별) 점검대상인 98개 재정수반요인을 제안자별로 살펴보면, 정부 90개, 의원 5개, 위원회 3개 순
 - 정부가 제출한 수입법률의 90개 재정수반요인(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5조 8,977억원(전체 세수효과의 96.9%)의 수입 감소가 예상
 - 조세지출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제외할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2조 3,855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22) 이하 연평균 값은 법률 제·개정에 따라 2023~2027년까지 예상되는 재정소요 총액을 5년으로 나눈 값으로, 예를 들어, 재정소요가 1~4년간 발생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함

- 위원회가 제안한 수입법률의 3개 재정수반요인(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변경 등)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962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 의원이 발의한 수입법률의 5개 재정수반요인(창업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적용기한 연장, 특허료 등의 반환청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5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표 11] 2022년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제안자별

(단위: 개, 억원, %)

제안자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 계	연평균	비 중
의원	5	-274	-55	0.03
위원회	3	-24,808	-4,962	3.0
정부	90	-794,885 (-619,274)	-158,977 (-123,855)	96.9
합 계	98	-819,968 (-644,356)	-163,994 (-128,871)	100.0

주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점검 가능한 98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안은 조세지출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원회별) 재정수반요인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 91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개,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위원회별로 1개 순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91개 재정수반요인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5조 9,902억원(전체 세수효과의 97.5%)의 수입 감소가 예상
 - 조세지출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제외할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2조 4,779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소관 1개 재정수반요인(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037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 기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수반요인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5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표 12] 2022년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단위: 개, 억원, %)

위원회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비 중
기획재정위원회	91	-799,508 (-623,897)	-159,902 (-124,779)	97.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	-269	-54	0.03
보건복지위원회	1	-5	-1	0.001
국토교통위원회	1	-1.4	-0.3	0.0002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	-20,184	-4,037	2.4
합 계	98	-819,968 (-644,356)	-163,994 (-128,871)	100.0

주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점검 가능한 98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안은 조세지출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주체별) 재정수반요인을 재정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 97개, 지방자치단체 1개

-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 관련 97개 재정수반요인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6조 3,994억원(전체 세수효과의 99.97%)의 수입 감소가 예상
 - 국세수입 관련 91개 재정수반요인으로 인해 연평균 16조 3,940억원, 국세외수입 관련 6개 재정수반요인으로 인해 연평균 53억원의 수입감소가 예상
 - ※ 국세수입의 경우 조세지출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제외

할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2조 8,818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지방자치단체 수입 관련 1개 재정수반요인(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조정)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0.3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표 13] 2022년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주체별

(단위: 개, 억원, %)

재정주체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비 중
국가	국세수입	91	-819,702 (-644,091)	-163,940 (-128,818)	99.97
	국세외수입	6	-265	-53	0.03
	소계	97	-819,967 (-644,355)	-163,994 (-128,871)	100.0
지방자치단체		1	-1	-0.3	0.0001
합 계		98	-819,968 (-644,356)	-163,994 (-128,871)	100.0

주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점검 가능한 98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안은 조세지출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수입법률의 주요 특징

□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 등
 - 「법인세법」 개정(2022.12.23.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12.23. 의결)

- (법인세법)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 1%p 인하(10~25% → 9~24%), 일반법인의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를 종전 60%에서 80%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이차전지 등) 등에 대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2%p 상향 조정하고, 기존 고용 관련 4개 세액공제(고용증대, 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 복귀자,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등

□ 소득세 및 자산과세 세부담 완화

- (소득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 「소득세법」 개정(2022.8.2. 및 2022.12.23.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12.23. 의결)
 - (소득세법)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을 확대, 총급여 1.2억원 미만 50세 미만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자의 재산합계액 요건을 완화(2억원 → 2.4억원)하고 지급액의 한도를 인상(근로장려금 150~300만원 → 165~330만원, 자녀장려금 70만원 → 80만원)
- (자산과세)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과세시행, 증권거래세율 인하, 종합 부동산세 과세기준액 인상 및 세율 인하 등
 - 「소득세법」 개정(2022.12.23.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12.23. 의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2022.12.31. 의결) 등
 - (소득세법)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규정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0.08%p 인하(2023년 0.03%p, 2024년 0.02%p, 2025년 0.03%p)
 -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기존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을 2주택 이하 0.6~3.0%에서 0.5~2.7%로 0.1~0.3%p, 3주택 이상 1.2~6.0%에서 0.5~5.0%로 0.7~1.0%p 인하

3. 수입법률별 재정소요점검

□ 2022년 가결된 재정수반요인의 수입법률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국세수입 관련 법률의 점검 대상인 재정수반요인 91개는 「조세특례제한법」 63개, 「소득세법」 11개, 「법인세법」 5개 등 분포
- 국세외수입 관련 법률의 점검 대상인 재정수반요인 7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특허법」, 「국세기본법」에 각각 1개씩 분포
 - 「국세기본법」의 경우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과태료)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요인 포함

[표 14] 2022년 수입법률 현황: 수입법률별

(단위: 건, 개)

법률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국세 수입	국세기본법	1	1	1	1
	소득세법	2	2	18	11
	법인세법	1	1	11	5
	부가가치세법	1	1	4	1
	개별소비세법	2	1	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1	9	1
	종합부동산세법	2	1	5	1
	인지세법	1	1	1	1
	주세법	1	1	1	1
	교육세법	1	1	1	1
	관세법	2	2	2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1	1	1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1	3	1
	조세특례제한법	1	1	83	63
	기타 ¹⁾	2	0	2	0
	소계	20	16	144	91
국세외 수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	1	1	1
	디자인보호법	1	1	1	1
	상표법	1	1	1	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1	1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	1	1	1
	특허법	1	1	1	1
	국세기본법	1	1	1	1
	기타 ¹⁾	12	0	20	0
	소계	19	7	27	7
합 계		38 ²⁾	22 ²⁾	171	98

주: 1)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 기타에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 미비 등으로 현시점에서 점검이 곤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을 포함

2)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법률 1건(「국세기본법」)이 존재하여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 각각의 재정수반법률 개수의 합과 전체 재정수반법률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입법률별 재정소요점검 결과의 분포를 살펴보면, 국세수입 관련 수입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세법의 비중이 높음

[표 15] 2022년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법률별

(단위: 개, 억원, %)

법률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비 중
국세 수입	법인세법	5	-205,813	-41,163	25.1
	소득세법	11	-134,962	-26,992	16.5
	조세특례제한법	63	-411,756 (-236,145)	-82,351 (-47,229)	50.2
	종합부동산세법	1	-56,009	-11,202	6.8
	관세법	2	-4,653	-931	0.6
	개별소비세법	1	-3,240	-648	0.4
	주세법	1	-1,638	-328	0.2
	국세기본법	1	-1,134	-227	0.1
	기타 ¹⁾	6	-497	-99	0.1
	소계	91	-819,702 (-644,091)	-163,940 (-128,818)	99.97
국세외 수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	-253	-51	0.03
	특허법	1	-11	-2	0.001
	기타 ²⁾	5	-1	-0.2	0.001
	소계	7	-265	-53	0.03
합 계		98	-819,968 (-644,356)	-163,994 (-128,871)	100.0

주: 1) 국세수입 기타에는 합계금액 1,000억원 이하의 6개 수입법률을 포함

2) 국세외수입 기타에는 합계금액 10억원 이하의 5개 수입법률을 포함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점검 가능한 98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안은 조세지출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 국세수입

(가) 법인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2년 가결된 「법인세법」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법인세율 인하,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외국법인의 국채 등으로 발생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설 등
 - 법인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1%p 인하
 - 과표구간별 세율(2억원 이하/2~200억원/200~3,000억원/3,000억원 초과): 10%/20%/22%/25% → 9%/19%/21%/24%
 -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및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도입
 - 종전 기업형태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었던 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지분율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적용
 - ※ 익금불산입률(20% 미만/20~50%/50% 이상): 30%/80%/100%
 -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도입
 - ※ 익금불산입률: 95%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일반법인 및 연결법인 등에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p 상향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80%
 - 외국법인의 국채 등으로 발생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설: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 (재정소요점검 결과) 「법인세법」(2022.12.23.의결) 개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 1,163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법인세율 인하: 연평균 3조 1,319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 연평균 7,474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연평균 1,604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외국법인의 국채 등으로 발생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설: 연평균 766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표 16] 2022년 개정 「법인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법인세법」 (정부, 2022.12.23.)	법인세율 인하	-156,597	-31,319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37,368	-7,474
	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33,192	-6,638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도입	-4,176	-835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8,018	-1,604
	외국법인의 국채 등으로 발생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설	-3,830	-766
합 계		-205,813	-41,163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소득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2년 가결된 「소득세법」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등(이상 세수감소 요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등(이상 세수증가 요인)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의 한도를 확대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1,200~4,600만원/4,600~8,800만원
→ ~1,400만원/1,400~5,000만원/5,000~8,800만원
 -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소득세법 시행령」) → 월 20만원(「소득세법」)

○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 확대: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퇴직소득 공제액 확대

- 근속연수별 퇴직소득 공제액 증가(5년 이하/6~10년/11~20년/20년 초과):
30만원/50만원/80만원/120만원 → 100만원/200만원/250만원/30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및 일정 연금소득 초과시 분리과세 허용

- 납입한도: 50세 미만 700만원 → **900만원**

50세 이상 900만원 → 900만원

※ 단, 연금저축의 경우 50세 미만 400만원 → **600만원**

50세 이상 600만원 → 600만원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15% 분리과세 선택 허용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시기를 종전 2023년에서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 시행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 1.2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 세액공제 한도: 50만원 → 20만원

□ (재정소요점검 결과) 「소득세법」(2022.8.2. 및 2022.12.23. 의결) 개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6,992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평균 2조 8,633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연평균 4,037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 확대: 연평균 2,385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연평균 1,245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연평균 8,066억원 국세수입 증가 예상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연평균 2,118억원 국세수입 증가 예상

[표 17] 2022년 개정 「소득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소득세법」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장, 2022.8.2.)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0,184	-4,037
「소득세법」 (정부, 2022.12.2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43,163	-28,633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 확대	-11,925	-2,385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6,225	-1,245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과세 시행	40,328	8,066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10,591	2,118
	기타 ¹⁾	-4,384	-877
합 계		-134,962	-26,992

주: 1) 2022년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등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조세특례제한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2년 가결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및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한도 조정 및 신규공제 추가 등을 통해 소득공제 지원 확대
 - 공제한도 구간 조정: 총급여액 1.2억원 초과구간의 기본공제를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사용처(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역 등)에 따라 각각 100만원이 적용되던 추가공제 한도를 사용처 관계없이 300만원 적용
 - ※ 단,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와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각각 적용되던 100만원의 한도를 사용처 관계없이 200만원 적용

- 신규공제 추가: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30%) 신설
※ 2023년 7월부터 적용
- 적용기한: 2022.12.31. → 2025.12.31.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의 본점소재지, 업종, 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일부를 5~30% 차등적으로 감면
 - 적용기한: 2022.12.31. → 2025.12.31.
-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료, 농약, 시료 등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2022.12.31. → 2025.12.31.
- 근로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재산합계액 요건 완화: 2억원 → 2.4억원
 - 지급액 한도: (근로장려금) 150~300만원 → 165~330만원
(자녀장려금) 70만원 → 80만원
-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중고자동차 수집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취득가액의 3%)
 - 적용기한: 2022.12.31. → 2025.12.31.
-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의 조합원 등의 1인당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 적용기한: 2022.12.31. → 2025.12.31.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및 중견기업의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등
 - ※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6% → 8%,
신성장·원천기술: (중견기업) 5% → 6%, 일반기술: (중견기업) 3% → 5%

- (재정소요점검 결과) 「조세특례제한법」(2022.12.23.의결) 개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8조 2,351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 단, 조세지출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제외할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 7,229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및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1조 7,710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1조 6,373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9,433억원 조세수입 감소 예상
 - 근로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연평균 9,333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5,405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3,514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연평균 1,825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표 18] 2022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조세특례제한법」 (정부, 2022.12.2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등	-88,548	-17,710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	-81,864	-16,373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47,165	-9,433
	근로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46,663	-9,333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40,090	-8,018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6,573	-1,315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27,024	-5,405
	조합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17,571	-3,514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등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9,127	-1,825
	기타 ¹⁾	-93,794	-18,759
합 계		-411,756 (-236,145)	-82,351 (-47,229)

주: 1)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안은 조세지출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종합부동산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2년 가결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재정수반요인은 주택분 기본공제액 상향 및 세율 인하

-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적용되는 주택분 기본공제액을 상향하고, 주택분 세율을 인하

- 과세기준액 상향: 일반 6억원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 세율(개인 기준): 2주택 이하 0.6~3.0% → 0.5~2.7%,
3주택 이상 1.2~6.0% → 0.5~5.0%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3주택 이상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세법개정으로 2주택 이하와 동일한 세율 적용

- (재정소요점검 결과) 「종합부동산세법」(2022.12.23.의결) 개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1,202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주택분 기본공제액 상향 및 세율 인하: 연평균 1조 1,202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표 19] 2022년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종합부동산세법」 (정부, 2022.12.23.)	주택분 기본공제액 상향 및 세율인하	-56,009	-11,202
합 계		-56,009	-11,202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관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2년 가결된 「관세법」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변경,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등
-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변경: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하는 환율기준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
 -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15만원 → 20만원
- (재정소요점검 결과) 「관세법」(2022.9.7. 및 2022.12.23. 의결) 개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931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변경: 연평균 925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연평균 6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표 20] 2022년 개정 「관세법」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관세법」 (기획재정부, 2022.9.7.)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변경	-4,623	-925
「관세법」 (정부, 2022.12.23.)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30	-6
합 계		-4,653	-931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기타 국세 관련 세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1년 가결된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다자녀가구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맥주 등 주세 세율에 가격변동지수 반영,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 다자녀가구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 구입시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면제
 - 맥주 등 주세 세율에 가격변동지수 반영: 맥주, 탁주 등 종량세가 적용되는 주세 세율에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신 가격변동지수(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반영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종전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한 납세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였으나,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
- (재정소요점검 결과) 「개별소비세법」(2022.12.23.의결) 개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648억원, 「주세법」(2022.12.23.의결) 개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328억원, 「국세기본법」(2022.12.23.의결)
개정으로 연평균 227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다자녀가구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연평균 648억원 국세 수입 감소 예상
- 맥주 등 주세 세율에 가격변동지수 반영: 연평균 328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연평균 227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표 21] 2022년 개정 기타 국세 관련 세법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개별소비세법」 (정부, 2022.12.23.)	다자녀가구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3,240	-648
「주세법」 (정부, 2022.12.23.)	맥주 등 주세 세율에 가격변동지수 반영	-1,638	-328
「국세기본법」 (정부, 2022.12.23.)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1,134	-227
「인지세법」 (정부, 2022.12.23.)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기준 변경	-207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 2022.12.23.)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인상	-125	-25
「교육세법」 (정부, 2022.12.23.)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관련 보험료 공제항목 변경 등	-89	-18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정부, 2022.12.23.)	관세 등 과다환급 및 부정환급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금지 폐지	-60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부, 2022.12.23.)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면제규정 신설	-10	-2
「부가가치세법」 (정부, 2022.12.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6	-1
합 계		-6,499	-1,300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국세외수입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2년 가결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특허법」 등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창업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유효기간 5년 연장(~2027.8.2.),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 청구기간 확대(3년 → 5년) 등
 - 창업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적용기한 연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등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7.8.2.까지 연장
 -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 연장: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을 5년 연장
- (재정소요점검 결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2.9.27.의결) 개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51억원, 「특허법」(2022.9.27.의결) 개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억원 국세외수입 감소 예상

[표 22] 2022년 개정 국세외수입 관련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 (제안자, 의결일)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정태호 의원 등, 2022.9.27.)	창업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유효기간 연장	-253	-51
「특허법」 (홍정민 의원 등, 2022.9.27.)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 청구기간 확대	-11	-2
「디자인보호법」 (홍정민 의원 등, 2022.9.27.)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청구기간 확대	-2	-0.5
「상표법」 (홍정민 의원 등, 2022.9.27.)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청구기간 확대	-2	-0.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위원장, 2022.10.27.)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하향 및 한도 신설	-1	-0.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영석 의원 등, 2022.5.29.)	부담금 면제의 유효기간 연장	5	1
「국세기본법」 (정부, 2022.12.23.)	과태료 상향	10	2
합 계		-265	-53

주: 단순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소요점검

□ 2022년 가결된 재정수반요인의 수입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국세수입 관련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 91개는 과세체계로 구분한 세부 유형별로 세액공제·감면 42개, 과세대상 24개, 과세표준 14개, 세율 4개, 기타 7개 등으로 분포
- 국세외수입 관련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 7개는 세부유형별로 적용기한 연장 5개, 요율 조정 2개 등으로 분포

[표 23] 2022년 수입법률 현황: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단위: 건, 개)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국세수입	과세대상	9	8	38	24
	과세표준	6	5	25	14
	세율	6	4	7	4
	세액공제·감면	5	4	49	42
	기타	11	10	25	7
	소계	20 ¹⁾	16 ¹⁾	144	91
국세외수입	적용기한 연장	5	5	5	5
	요율 조정	3	2	3	2
	기타	11	0	19	0
	소계	19	7	27	7
합 계		38 ²⁾	22 ²⁾	171	98

주: 1) 국세수입 법률이 과세체계별로 중복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개별 과세체계별로 분류된 법률 건수와 합계 건수가 일치하지 않음

2)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 1건(「국세기본법」) 존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Box2]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구분

□ (국세수입) 국세수입은 재정수반요인 유형을 과세체계상 어느 요인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감면, 기타 등으로 구분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 사항으로 비과세 요건 변동, 과세 신고대상 요건 변동 등을 포함
 - 과세표준: 납세의무자의 소득 등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 사항으로 과세표준 구간 변동, 소득공제·감면 요건 변동, 법인의 익금 및 손금산입 변동 등을 포함
 - 세율: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 사항으로 세율의 인상·인하, 중과세율의 적용 및 적용배제 등을 포함
 - 세액공제·감면: 산출세액*에 공제·감면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 사항으로 세액공제·감면 요건 변동, 공제·감면을 변동, 공제·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을 포함
-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의미
- 기타: 기타 납부기한 등 세무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 사항이나, 과세체계상 구분이 어려운 소득세 근로·자녀장려세제 등을 포함

□ (국세외수입) 국세외수입은 재정수반요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따라 적용기한 연장, 요율 조정, 기타 등으로 구분

- 적용기한 연장: 부담금 및 과태료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법률개정 사항 등을 포함
- 요율 등 조정: 부담금 및 과태료의 한도나 요율 등을 상향 또는 하향하는 등의 법률개정 사항 등을 포함
- 기타: 부담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근거조항 신설 및 정비 등을 포함

- 수입유형별·재정수반요인별 재정소요점검 결과의 분포를 살펴보면, 국세 수입의 비중이 높으며, 국세수입 세부유형별로는 과세표준(연평균 5조 9,423억원), 세율(5조 2,282억원), 세액공제·감면(3조 2,909억원) 순으로 비중이 높음

[표 24] 2022년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단위: 개, 억원, %)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 계	연평균	비 중
국세수입	과세대상	18	-88,888	-17,778	10.8
	과세표준	12	-297,114	-59,423	36.2
	세율	4	-261,409	-52,282	31.9
	세액공제·감면	48	-164,545	-32,909	20.1
	기타	9	-7,746	-1,549	0.9
	소계	91	-819,702	-163,940	99.97
국세외수입	적용기한 연장	5	-274	-55	0.03
	요율 조정	2	9	2	-0.001
	소계	7	-265	-53	0.03
합 계		98	-819,968	-163,994	100.0

주: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점검 가능한 98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 국세수입

(가) 과세대상

□ (유형 개요) 과세대상에 영향을 주는 재정수반요인은 비과세 대상 및 요건의 조정 등을 통한 과세대상의 확대 및 축소가 있음

- 2022년 가결된 과세대상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근로자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국세수입의 과세대상 관련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7,778억원의 국세수입 감소 예상

[표 25] 2022년 개정 과세대상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20,184	-4,037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7,571	-3,514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4,895	-2,979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10,372	-2,074
기타 ¹⁾	-25,866	-5,173
합 계	-88,888	-17,778

주: 1) 외국법인의 국제 등에 대한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 비과세 등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과세표준

- (유형 개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재정수반요인은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 소득공제·감면의 감면요건 및 감면율 조정, 법인소득 산정시 영향을 미치는 익금·손금의 조정, 이월결손금 조정 등이 있음
- 2022년 가결된 과세표준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및 적용기한 연장,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 확대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국세수입의 과세표준 관련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조 9,423억원의 국세수입 감소 예상

[표 26] 2022년 개정 과세표준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43,163	-28,63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및 적용기한 연장	-88,548	-17,710
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33,192	-6,638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 확대	-11,925	-2,385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8,018	-1,604
기타 ¹⁾	-12,268	-2,454
합 계	-297,114	-59,423

주: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세율

□ (유형 개요) 세율에 영향을 주는 재정수반요인은 세율의 인상 및 인하, 영세율 적용, 세율 계산방식 변경 등이 있음

- 2022년 가결된 세율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법인세율 인하,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세율 인하,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맥주 등 주세 세율에 가격변동지수 반영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국세수입의 세율 관련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조 2,282억원의 국세수입 감소 예상

[표 27] 2022년 개정 세율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법인세율 인하	-156,597	-31,31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등	-56,009	-11,202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47,165	-9,433
맥주 등 주세 세율에 가격변동지수 반영	-1,638	-328
합 계	-261,409	-52,282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세액공제 · 감면

- (유형 개요) 세액공제 · 감면에 영향을 주는 재정수반요인은 세액공제 및 감면의 적용요건 조정,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인상 및 인하, 공제한도 변경 등이 있음
 - 2022년 가결된 세액공제 · 감면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국세수입의 과세표준 관련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2,909억원의 국세수입 감소 예상

[표 28] 2022년 개정 세액공제·감면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	-81,864	-16,373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27,024	-5,405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4,835	-2,967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9,267	-1,853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9,127	-1,825
기타 ¹⁾	-22,428	-4,486
합 계	-164,545	-32,909

주: 1)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기타 국세수입 유형

- (유형 개요) 기타 국세수입 유형의 재정수반요인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요건 및 지급액 조정,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관련 기한 조정, 과세유예 등이 있음
 - 2022년 가결된 기타 유형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근로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과세시행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국세수입의 기타 유형 관련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549억원의 국세수입 감소 예상

[표 29] 2022년 개정 기타 국세수입 유형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근로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46,663	-9,333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40,090	-8,018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6,573	-1,315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1,134	-227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과세 시행	40,328	8,066
기타 ¹⁾	-277	-55
합 계	-7,746	-1,549

주: 1)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조정 등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국세외수입

(가) 적용기한 연장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2년 가결된 국세외수입의 적용기한 연장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창업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적용기한 연장, 특허료 등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 연장 등
 - 창업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적용기한 연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등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7.8.2.까지 연장
 -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 연장: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을 5년 연장
- (재정소요점검 결과) 국세외수입의 적용기한 연장 관련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5억원의 국세외수입 감소 예상
 - 창업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적용기한 연장: 연평균 51억원 국세외수입 감소 예상
 -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 연장: 연평균 2억원 국세외수입 감소 예상

[표 30] 2022년 개정 수입법률 적용기한 연장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창업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적용기한 연장	-253	-51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 연장	-11	-2
기타 ¹⁾	-10	-2
합 계	-274	-55

주: 1) 디자인등록료,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 연장 등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요율 등 조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2022년 가결된 국세외수입의 요율 등 조정 관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한도 상향,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조정 등

-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을 부담금의 3%에서 체납부담금의 1%로 조정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국세외수입의 요율 조정 관련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7억원의 국세외수입 증가 예상

-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한도 상향: 연평균 2억원 국세외수입 증가 예상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조정: 연평균 0.3억원 국세외수입 감소 예상

[표 31] 2022년 개정 수입법률 요율 조정 관련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한도 상향	10	2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조정	-1	-0.3
합 계	9	1.7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2022년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1. 개요

- 2022년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변동에 영향을 미친 지출법률은 118건(재정수반요인은 228개)으로서 이 중 점검이 가능한 88건 법률(재정수반요인 123개)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9,533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 이하에서는 점검이 가능한 88건 법률의 123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하여 재정소요점검 결과 서술
- (제안자별) 점검 대상인 123개 재정수반요인을 제안자별로 살펴보면, 위원회 100개, 의원 23개
 - 위원회가 제안한 지출법률의 100개 재정수반요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완화,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580억원(54.2%)의 지출 증가가 예상
 - 의원이 발의한 지출법률 23개 재정수반요인(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 상향 등)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8,953억원(45.8%)의 지출 증가가 예상

[표 32] 2022년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제안자별

(단위: 개, 억원, %)

제안자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 계	연평균	비 중
의원	23	44,766	8,953	45.8
위원회	100	52,900	10,580	54.2
합 계	123	97,666	19,533	100.0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점검 가능한 123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원회별)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개, 환경노동위원회 18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8개, 행정안전위원회 14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개, 정무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9개 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은 기본직접 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완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 도입 등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007억원(전체 추가재정소요의 20.5%)의 지출 증가가 예상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바이오가스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709억원(13.9%)의 지출 증가가 예상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지정, 폐광지역 기념사업 등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11억원(2.6%)의 지출 증가가 예상
- 그 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으로 연평균 271억원(1.4%)의 지출 증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으로 연평균 335억원(1.7%)의 지출 증가, 정무위원회 소관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으로 연평균 5,588억원(28.6%)의 지출 증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으로 연평균 1,225억원(6.3%)의 지출 증가 등

[표 33] 2022년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단위: 개, 억원, %)

위원회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 계	연평균	비 중
국회운영위원회	-	-	-	-
법제사법위원회	3	1.4	0.3	0.001
정무위원회	9	27,941	5,588	28.6
기획재정위원회	-	-	-	-
교육위원회	3	7,042	1,408	7.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	344	69	0.4
외교통일위원회	-	-	-	-
국방위원회	2	9	2	0.01
행정안전위원회	14	1,354	271	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	3,002	600	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	20,035	4,007	2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8	2,555	511	2.6
보건복지위원회	4	14,034	2,807	14.4
환경노동위원회	18	13,547	2,709	13.9
국토교통위원회	9	6,125	1,225	6.3
정보위원회	-	-	-	-
여성가족위원회	1	2.4	0.5	0.002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	1,673	335	1.7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	-	-	-
합 계	123	97,666	19,533	100.0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점검 가능한 123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주체별) 재정수반요인을 재정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 111개, 지방자치단체 18개*

- 국가의 지출 관련 재정수반요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 8,777억원(전체 추가재정소요의 96.1%)의 지출 증가가 예상
- 지방자치단체 지출 관련 재정수반요인은 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등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756억원(3.9%)의 지출 증가가 예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6개의 재정수반요인으로 인하여 재정주체별 재정수반요인 개수의 합과 전체 개수(123개)가 일치하지 않음

[표 34] 2022년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주체별

(단위: 개, 억원, %)

재정주체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¹⁾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 계	연평균	비 중
국가	111	93,884	18,777	96.1
지방자치단체	18	3,782	756	3.9
합 계	123	97,666	19,533	100.0

주: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 6개 포함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점검 가능한 123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회계의 재원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로 충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2022.12.24. 의결, 2023.1.1. 시행)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일부 감소하나(2023년 추가 재정소요 △1조 5,199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대학 지원사업 등은 확대(2023년 추가재정소요 1조 7,200억원)

□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대한 지원 확대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 포괄성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확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2.5.29. 의결, 2023.1.1. 시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2.5.29. 의결, 2024.6.1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022.5.29. 의결, 2023.7.1. 시행) 등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22.1.11. 의결, 2022.8.4. 시행) 및 개정(2022.12.28. 의결, 2023.7.1. 시행) 등

3. 지출분야별 재정소요점검

□ 2022년 가결된 재정수반요인의 지출분야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지출법률의 점검 대상인 재정수반요인 123개는 일반·지방행정 20개, 농림수산 19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8개, 사회복지 15개, 환경 14개, 공공질서 및 안전 9개, 과학기술 8개, 국토 및 지역개발 5개 등 분포

[표 35] 2022년 지출법률 현황: 지출분야별

(단위: 건, 개)

지출분야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점검대상	전체	점검대상
일반·지방행정	17	12	48	20
공공질서 및 안전	13	9	13	9
통일·외교	-	-	-	-
국방	2	2	2	2
교육	4	3	4	3
문화 및 관광	4	4	4	4
환경	11	10	21	14
사회복지	11	10	25	15
보건	2	2	3	2
농림수산	20	12	37	1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	10	48	18
교통 및 물류	4	4	4	4
통신	-	-	-	-
국토 및 지역개발	8	5	8	5
과학기술	5	5	11	8
합 계	118	88	228	1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출분야별 재정소요점검 결과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28.2%), 사회복지(23.5%), 농림수산(20.4%), 교육(7.2%), 환경(7.1%), 국토 및 지역개발(6.0%) 순으로 지출 증가 비중이 큼

[표 36] 2022년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분야별

(단위: 개, 억원, %)

지출분야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 계	연평균	비 중
일반·지방행정	20	27,534	5,507	28.2
공공질서 및 안전	9	600	120	0.6
통일·외교	-	-	-	-
국방	2	9	2	0.01
교육	3	7,042	1,408	7.2
문화 및 관광	4	3,002	600	3.1
환경	14	6,886	1,377	7.1
사회복지	15	22,953	4,591	23.5
보건	2	686	137	0.7
농림수산	19	19,929	3,986	20.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8	2,555	511	2.6
교통 및 물류	4	302	60	0.3
통신	-	-	-	-
국토 및 지역개발	5	5,823	1,165	6.0
과학기술	8	344	69	0.4
합 계	123	97,666	19,533	100.0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점검 가능한 123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이하에서는 2023~2027년 연평균 지출변동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분야인 일반·지방행정, 교육, 환경, 사회복지, 농림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지출분야별 주요 재정수반요인을 분석

가. 일반·지방행정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법률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본금 상향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 인상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22.12.28. 의결, 2023.1.17. 시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이 7조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4.5. 의결, 2022.10.27. 시행)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인구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완화
 - 투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²³⁾ 등의 수당 인상: 「공직선거법」 개정(2022.4.15. 의결, 2022.4.20. 시행)으로 투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이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재정소요점검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개정 등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507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23) 투표참관인 등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포함

[표 37] 2022년 일반·지방행정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2022.12.28.)	25,000	5,000
공직선거법(2022.4.15.)	868	17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2.4.5.)	761	152
기타(9개 법률)	905	181
합 계	27,534	5,507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교육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교육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법률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2022.12.24. 의결, 2023.1.1. 시행)으로 기존 사업이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 발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에 연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22.12.24. 의결, 2023.1.1. 시행)으로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²⁴⁾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감소

□ (재정소요점검 결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408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2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표 38] 2022년 교육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2022.12.24.)	52,603	10,5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22.12.24.)	-45,598	-9,120
자격기본법(2022.12.8.)	36	7
합 계	7,042	1,408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환경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환경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법률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바이오가스센터 설치·운영,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조치 및 실태조사 등
 - 바이오가스센터 설치·운영: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2022.12.8. 의결, 2023.12.31. 시행)으로 환경부장관이 바이오가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바이오가스센터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 가능
 -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하수도법」 개정(2022.5.29. 의결, 2022.12.10. 시행)으로 환경부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유역하수도지원센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

-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조치 및 실태조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5.29. 의결, 2022.6.11. 시행)으로 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등²⁵⁾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요청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인공구조물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을 포함

□ (재정소요점검 결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과 「하수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377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39] 2022년 환경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2022.12.8.)	5,073	1,015
하수도법(2022.5.29.)	333	6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2.5.29.)	213	43
기타(7개 법률)	1,268	254
합 계	6,886	1,377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사회복지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사회복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법률의

25) “공공기관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포함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 설치·운영,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대상 확대 등

-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2.5.29. 의결, 2024.6.11.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수행
-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022.5.29. 의결, 2023.7.1. 시행)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 노무제공자로 확대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요건(전속성)이 있었으나, 노무제공자는 이러한 제약 삭제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2.5.29. 의결, 2023.1.1. 시행)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대상에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 장애인을 포함하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재정소요점검 결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591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40] 2022년 사회복지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5.29.)	10,194	2,039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5.29.)	6,401	1,28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2.5.29.)	3,154	631
기타(7개 법률)	3,203	641
합 계	22,953	4,591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농림수산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농림수산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법률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완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 신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완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9.27. 의결, 2023.4.19. 시행)으로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공익기능증진직불”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 기존 기본직접지불제도는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제도 대상농지 요건을 기반으로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 요건 삭제
-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 도입 등: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9.27. 의결, 2023.4.1. 시행)으로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지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소규모어가는 거주, 생계, 어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는 어가를 의미
 -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12.8. 의결, 2023.6.28. 시행)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이용시설, 해양생태계 연구시설 등을 설치·운영
- (재정소요점검 결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986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41] 2022년 농림수산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2022.9.27)	15,000	3,00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2022.9.27)	2,260	45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2.12.8.)	1,576	315
기타(9개 법률)	1,094	219
합 계	19,929	3,986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국토 및 지역개발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법률의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대통령 집무실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지원 등
 - 대통령 집무실 설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2.5.29. 의결, 2022.12.11. 시행)으로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집무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2.5.29. 의결, 2022.9.11. 시행)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국립박물관단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9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건립되는 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을 의미
- (재정소요점검 결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165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표 42] 2022년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분야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22.5.29.)	4,595	919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5.29.)	966	193
기타(3개 법률)	262	52
합 계	5,823	1,165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지출성격별 재정소요점검

□ 2022년 가결된 재정수반요인의 지출성격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재정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과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인 ‘재량지출’로 구분²⁶⁾
- 지출법률의 점검 대상인 재정수반요인 123개는 의무지출 12개, 재량지출 111개 분포

26)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호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제4호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

[표 43] 2022년 지출법률 현황: 지출성격별

(단위: 건, 개, %)

지출성격	재정수반법률		재정수반요인	
	전체 ¹⁾	점검대상 ²⁾	전체	점검대상
의무지출 (구성비)	13 (10.9)	11 (12.4)	24 (10.5)	12 (9.8)
재량지출 (구성비)	106 (89.1)	78 (87.6)	204 (89.5)	111 (90.2)
합 계	118 (100.0) ³⁾	88 (100.0) ³⁾	228 (100.0)	123 (100.0)

주: 1)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건 포함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점검 대상 법률 1건 포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의 재정주체별 구성비의 합은 100.0%를 초과하나 합계의 의미를 고려하여 100.0%로 표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출분야별 재정소요점검 결과의 분포를 살펴보면, 의무지출은 연평균 3,667억원 감소, 재량지출은 2조 3,200억원 증가하여 의무지출 감소분 보다 재량지출 증가분이 크게 나타남

[표 44] 2022년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성격별

(단위: 개, 억원, %)

지출성격	점검대상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 계	연평균	비 중
의무지출	12	-18,334	-3,667	-
재량지출	111	116,000	23,200	-
합 계	123	97,666	19,533	-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점검 가능한 123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 의무지출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의무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완화,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2022.12.24. 의결, 2023.1.1. 시행)으로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²⁷⁾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감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 2023년 예산에 따르면, 교육부 일반회계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교육세 지원분 1조 5,199억원 전출(「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025년까지만 재정소요 감소)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완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9.27. 의결, 2023.4.19. 시행)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공익기능증진직불”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기존 기본직접지불제도는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제도 대상농지 요건을 기반으로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 요건 삭제
 -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022.5.29. 의결, 2023.7.1. 시행)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 노무제공자로 확대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요건(전속성)이 있었으나, 노무제공자는 이러한 제약 삭제
 - 그 밖에 의무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요인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2.5.29. 의결, 2023.1.1. 시행)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2.12.8. 의결, 2023.6.17. 시행)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확대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등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667억원의 의무지출 감소 예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2023~2025년 동안 2023년 예산 수준의 교육세 전입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할 때 연평균 9,120억원 감소 예상²⁸⁾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완화: 공익기능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지면적 및 단가 등을 고려할 때 연평균 3,000억원 증가 예상
 -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산재보험 신규 대상자, 1인당 평균 보험급여액 등을 고려할 때 연평균 1,280억원 증가 예상

2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고려할 때 재정소요 감소는 3년(2023~2025년) 동안 매년 1조 5,199억원 규모이나, 연평균(5년 단순평균)으로 환산하면 9,120억원 규모

[표 45] 2022년 의무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22.12.24.)	-45,598	-9,12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2022.9.27.)	15,000	3,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5.29.)	6,401	1,28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2.5.29.)	3,154	6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12.8.)	2,147	429
기타(6개 법률)	562	112
합 계	-18,334	-3,667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재량지출

□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내용) 재량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수반요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 상향, 바이오가스센터 설치·운영 등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2022.12.24. 의결, 2023.1.1. 시행)으로 기존 사업을 확대 수행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 2023년 예산에 따르면, 교육부 일반회계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교육세 지원분 1조 5,199억원 및 추가 지원분 2,001억원 등 총 1조 7,200억원 전출²⁹⁾(「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025년까지만 재정소요 증가)

29) 기존 사업(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의 이관에 따른 전입금 8조 227억원은 제외한 추가 전입금 규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본금 상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2.12.28. 의결, 2023.1.17. 시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이 3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되어 추가재정소요 발생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안정적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
 - 바이오가스센터 설치·운영: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2022.12.8. 의결, 2023.12.31. 시행)으로 환경부장관이 바이오가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 바이오가스센터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 가능
 - 그 밖에 재량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요인은 다음과 같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2.5.29. 의결, 2024.6.11. 시행)에 따른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실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2.5.29. 의결, 2022.12.11. 시행)에 따른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등
- (재정소요점검 결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 등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조 3,200억원의 재량지출 증가 예상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2023년 예산상 추가재정소요 수준(1조 7,200억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연평균 1조 521억원 증가 예상³⁰⁾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본금 상향: 2023년도 예산(2,800억원) 및 금융위원회의 중기계획을 고려할 때 연평균 5,000억원 증가 예상

3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고려할 때 재정소요 증가는 3년(2023~2025년) 동안 매년 1조 7,200억원 규모이나, 연평균(5년 단순평균)으로 환산하면 1조 521억원 규모

- 바이오가스센터 설치·운영: 2023년도 예산(65억원, 시범사업) 및 환경부의 중기계획을 고려할 때 연평균 1,015억원 증가 예상

[표 46] 2022년 재량지출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법률명(의결일)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2022.12.24.)	52,603	10,52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2022.12.28.)	25,000	5,00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5.29.)	10,194	2,039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2022.12.8.)	5,073	1,0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22.5.29.)	4,595	919
기타(73개 법률)	18,535	3,707
합 계	116,000	23,200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V. 결 론

- (점검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6조 3,994억원의 수입 감소와 1조 9,533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됨
 - 2022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154건 중 점검이 가능한 110건의 221개 재정수반요인의 재정변동을 분석
 - 점검 대상 수입법률은 22건으로 98개 재정수반요인
 - 점검 대상 지출법률은 88건으로 123개 재정수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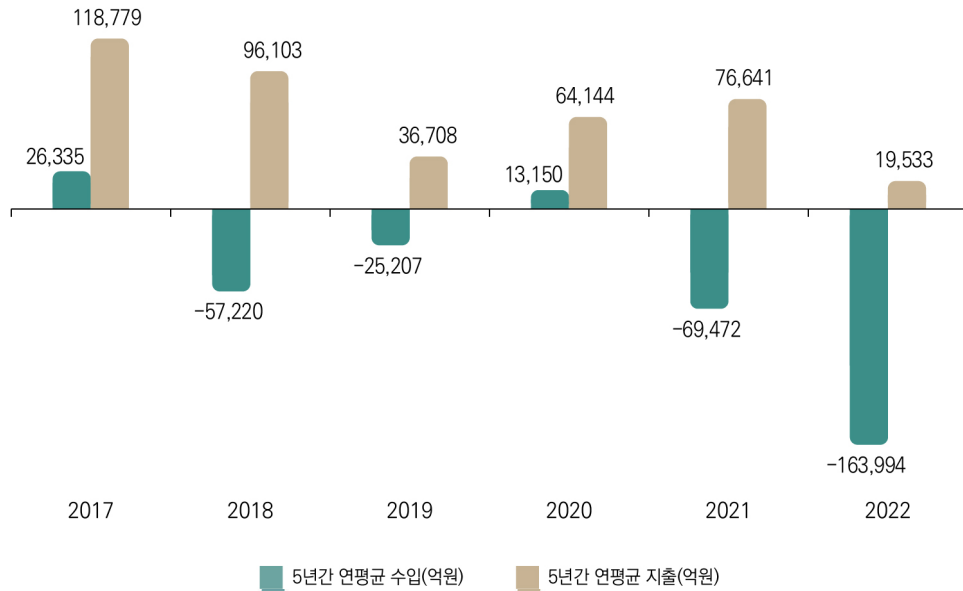
-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법률별·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입법률별)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을 수입법률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 관련 91개는 「조세특례제한법」 63개, 「소득세법」 11개, 「법인세법」 5개 등이고, 국세외수입 관련은 7개
 - 「법인세법」: 연평균 4조 1,163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소득세법」: 연평균 2조 6,992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조세특례제한법」: 연평균 8조 2,351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종합부동산세법」: 연평균 1조 1,202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등
 -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을 수입 재정수반요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 관련 91개는 세액공제·감면 42개, 과세대상 24개, 과세표준 14개 등이고, 국세외수입 관련은 7개
 - 과세대상 관련: 연평균 1조 7,778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과세표준 관련: 연평균 5조 9,423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세율 관련: 연평균 5조 2,282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 세액공제·감면 관련: 연평균 3조 2,909억원 국세수입 감소 예상 등

□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분야별·지출성격별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출분야별)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을 지출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 20개, 농림수산 분야 19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8개, 사회복지 분야 15개, 환경 분야 14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개, 과학기술 분야 8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개 등
 - 일반·지방행정 분야: 연평균 5,507억원 지출 증가 예상
 - 교육 분야: 연평균 1,408억원 지출 증가 예상
 - 환경 분야: 연평균 1,377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사회복지 분야: 연평균 4,591억원 지출 증가 예상
 - 농림수산 분야: 연평균 3,986억원 지출 증가 예상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연평균 1,165억원 지출 증가 예상
 - 그 외 분야: 연평균 1,500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지출성격별) 점검 대상 재정수반요인을 지출성격별로 살펴보면, 의무지출은 12개, 재량지출은 111개
 - 의무지출: 연평균 3,667억원 감소 예상
 - 재량지출: 연평균 2조 3,200억원 증가 예상

□ (종합) 2022년의 가결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결 법률의 영향에 따른 지출 증가는 예년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 감소는 큰 편일 것으로 예상됨

[그림 5] 각 연도 재정소요점검 결과 추이



주: 조세지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할 경우, 수입법률로 인한 재정감소 효과는 2022년 기준 연평균 12조 8,871억원으로 예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2022년 주요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표

□ 2022년 재정수반법률의 재정변동분이 연평균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요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표를 제시

〈수입법률〉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2117151	「조세특례제한법」	-411,756	-82,35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	(-236,145)	(-47,229)
2117165	「법인세법」	-205,813	- 41,163
	- 법인세 과표구간별 1%p 세율 인하 등		
2117169	「소득세법」	-114,778	-22,956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2117158	「종합부동산세법」	-56,009	-11,202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2116728	「소득세법」	-20,184	-4,037
	-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2117264	「관세법」	-4,623	-925
	- 과세부과 과세가격 결정 적용환율 변경		
2117160	「개별소비세법」	-3,240	-648
	-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2117166	「주세법」	-1,638	-328
	- 주세 물가연동 방식 변경		
2117161	「국세기본법」	-1,124	-225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21154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53	-51
	- 창업중소기업 부담금 면제조항 유효기간 연장		
2117167	「인지세법」	-207	-41
	-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조정		
21171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5	-25
	- 영농상속공제 한도 인상		
2117163	「교육세법」	-89	-18
	- 금융 및 보험업자 수익금액 관련 보험료 공제 조정 등		
211715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60	-12
	- 관세 과다 및 부정환급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금지 폐지		

주: ()안은 조세지출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출법률〉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211719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52,603	10,521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211787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5,000	5,000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본금 상향 조정		
211756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15,000	3,000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완화		
211470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194	2,039
	-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 설치·운영		
211574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01	1,28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확대		
2118779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5,073	1,015
	- 바이오가스센터 설치·운영 등		
21157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4,595	919
	- 대통령 집무실 설치		
211573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154	63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대상 확대		
2115276	「문화재보호법」	2,661	532
	- 국가지정문화재 감면 관람료 지원		
211756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260	452
	-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 도입 등		
21187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47	429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 지급		
21187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76	315
	-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2105842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66	193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2115295	「공직선거법」 -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 증원 등	868	174
211434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본전략 수립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운영	826	165
211873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 검진 등	783	157
211508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761	152
2115739	「구강보건법」 -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681	136
2119184	「자원순환기본법」 - 유통포장재 순환이용 촉진 사업	669	134
2114763	「공직선거법」 - 격리자등 투표시간 구별	594	119
211425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위령탑 및 추모공간 조성	425	85
211878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423	85
211472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운영	356	71
2115764	「하수도법」 -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333	67
2118784	「발명진흥법」 -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및 시작품의 제작 지원	322	64
2115729	「공항시설법」 -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위탁	263	53
2118753	「하수도법」 - 침수 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실시	240	48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210990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36	47
	- 국새만금간척박물관 설립 및 운영		
211575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14	43
	- 플랫폼 운영자 산재보험 특례		
211576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3	43
	-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조치 및 실태조사		
2118791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212	42
	- 기본계획 수립 및 공급기업 육성 등		
211877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6	41
	- 임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2118771	「산림기본법」	204	41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등		
2118781	「도로교통법」	183	37
	-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및 배부		
2114762	「정치자금법」	178	36
	- 공직선거 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2115277	「공연법」	165	33
	- 공공 공연장 방화막 설치		
2118764	「양식산업발전법」	155	31
	- 양식창업 등 지원		
211842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144	29
	- 동물원 및 수족관 기술 및 경비 지원		
2110210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4	25
	-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211403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120	24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2115731	「우주개발 진흥법」	120	24
	- 우주창업 촉진 등		

(단위: 억원)

의안번호	법률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2027년)	
		합계	연평균
211875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 조정	118	24
211727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상물등급위원회 내 부서 신설 및 자체등급분류시스템 구축·운영 등	117	23
2117948	「섬 발전 촉진법」 - 교통편의 증진 지원	112	22
211575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4·16재단 출연기간 연장	106	21
2118774	「전기통신사업법」 -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예방 체계 구축 등	83	17
2115732	「공무원 재해보상법」 - 공무원 재해인정 특례	82	16
2118776	「종자산업법」 - 무병화인증 등	81	16
2117322	「지하수법」 -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지원	77	15
2114360	「환경정책기본법」 - 한국환경보전원 설립 지원	63	13
21187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집적 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기술 지원 업무 위탁	61	12
211576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청정수소 인증 지원 등	61	12
211573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보관 및 보고 의무 등	60	12
2114155	「점자법」 - 점자교육의 기반조성	60	12
211719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45,598	-9,120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발간일	2023년 5월 26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3776)	
ISBN 979-11-6799-128-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9-002017-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